

김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17호

2023년 제3회 김포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2023년 제3회 김포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7월 24일

김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계		1명			
도시디자인 <도시계획과> [재공고]	일반임기제 시책7급	1명	1년	주40 시간	○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 및 개발 ○ 디자인 관련 조례 제·개정 등 법령 업무 ○ 유니버설디자인 및 셉테드 업무 ○ 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등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공고 사유 : 서류전형합격자 없음

※ 「2023년 제3회 김포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위 재공고 분야에 응시한 사람은 재응시 불필요

2 법령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마. 「김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 성별, 연령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의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요건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채용예정 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채용자격 기준
도시디자인 <도시계획과> 일반임기제 시설7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도시디자인(경관, 공공디자인) 분야 업무경력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 상위 계급(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임용등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김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14)
-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하며, 근무기간 산정 시 시간할 계산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 · 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
-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8. 7.(월) ~ 8. 9.(수)
- 접 수 처 : 김포시청 행정과 인재육성팀(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신분증 지참)
 - 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김포시청 민원동 1층(민원여권과)에서 응시수수료(7천원) 납부 후 직급별 수입증지 발급
 - ②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주소 :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 김포시청 행정과(인재육성팀 채용담당자)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응시분야 직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7천원)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 · 동봉
 -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체국 우편통상환 구입 마감시간 유의
 - 우편봉투 겉면에 '2023년 제3회 김포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표는 이메일 회신 예정

나.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3. 8. 7.(월) ~ 8. 9.(수)	2023. 8. 14.(월) 전·후	2023. 8. 17.(목) 전·후	2023. 8. 18.(금)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공고는 김포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방문접수) 민원여권과에 수수료 납부 후 인재육성팀 원서 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 · 동봉 ※ 우편 통상환증서구입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 시간 유의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제5호)	해당 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	필수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응시분야만 발취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항목 삭제)	필수
7.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또는 초본 제출-병역사항 표기)	필수
8.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필수
9.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필수
10. 경력(재직)증명서	○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재직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력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국세청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필수

구 분	내 용	비 고
11. 기타 증빙서류	○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 ○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자, 공적 등 기재된 것) ○ 관련전공 증명서(추가필수자격요건, 우대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자 제출
※ 주의사항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금지, 양면인쇄 금지 ○ 모든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7 보수 및 복무

가. 보수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의 5호)을 원칙으로 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임용예정 분야	임용직급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비 고
도시디자인	일반임기제 시설7급	64,776천원	46,006천원	주40시간

- ※ 연봉 외 제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단,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복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연장 가능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계약기간 연장에 반영

8 기타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원서 접수 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김포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 착오, 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방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분에 한해 접수 가능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립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불가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경력 ·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과 인재육성팀(☎031-980-2324)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아래 표 참조

임용예정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도시디자인	도시계획과	031-980-5928